

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04.02]
(제정) 2024.04.02 조례 제2085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건강증진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546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2. “유해약물”이란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,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으로부터 파주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·청소년을 위한 조치) 시장은 아동·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·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1.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
3. 생애주기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
4.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사업의 시행)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·지원사업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
5.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 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, 사법기관, 의료기관,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파주시 마약 및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단, 「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9조(마약퇴치의 날 행사)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, 단체,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「파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(2024. 4. 2. 조례 제208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